

동두천 센트레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0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8~21층, 5개동, 총 3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주차대수 : 아파트 총 411대, 세대당 1.08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총 37세대

| 구분 | | 59(예비) | 74A(예비) | 74B(예비) | 84(예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2(1) | 2(1) | 1(1) | 2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2(1) | 1(1) | 1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1) | 1(1) | 1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3(2) | 3(1) | 1(1) | 3 |
| | 장애인 | 3(2) | 3(1) | 1(1) | 3 |
| 계 | | 12(7) | 10(5) | 5(3) | 10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및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순번을 선정하여 송부 요망.
- ※ 입주시기는 2020년 11월로 예정이나, 향후 변동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단, 동두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시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공급신청자 중 선정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상자 유족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기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특별공급 일정 및 선정 방법

■ 공급일정(예정)

| 구분 | 일자 | 장소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09.21(금) | - |
| M/H 오픈일 | 2018.10.05(금) | 사업주체 견본주택 |
| 신청일자 | 2018.10.10(수)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사업주체 견본주택 |
| 당첨자 발표 | 2018.10.18(목)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 | | |
|--------------|--|-----------|
|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 계약 체결 | 2018.10.29(월) ~ 2018.10.31(수) [3일간 10:00~16:00] | 사업주체 견본주택 |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진행(10:00~14:00)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유의사항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다자녀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

| | | | | |
|------------------|------------------------|-----------------------|----------------|--|
| 특별공급 | | | 직계존속 |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 인감도장 | 대리인 | |

5. M/H 안내사항

- 위치 : 동두천시 송내동 705번지
- 문의번호 : 1800-0699
- 약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705

문의 1800-0699

현장



현장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08-1외

문의 1800-0699